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2970번
- 제 안 자 : 김인제 의원(찬성자 29명)
- 제 안 일 : 2025년 8월 11일
- 회 부 일 : 2025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-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소년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기관의 지원금을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재산갈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이에 금융 피해 관련한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절차 등 법적 지원 규정 신설(안 제6조제1항제9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입법예고(2025. 8. 20. ~ 8. 24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(이하 '본 개정안')은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 등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음(안 제6조제1항제9호 신설 등).
- 본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에 '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'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(청소년단기쉼터 등)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 등에 시장이 지원(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)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9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</u>
9. (생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- 「지방자치법」(제13조제2항제2호라목)은 ‘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’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제16조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(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)의 수립·시행과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(상담, 보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 등)를 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같은 법(제16조제4항, 제40조)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- 본 개정안(안 제6조제1항제9호 신설 등)은 법령과 조례의 목적(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)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.

※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※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보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※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0조(예산의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¹⁾(청소년복지시설) 운영 지침(여성가족부, 「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」)에서도 단기청소년쉼터²⁾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서비스 내용으로 법적 지원(법적 옹호, 법률연계, 법률행정지원 등)을 명시하고 있음.

〈 단기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〉

○ 세부내용		
서비스 요소	서비스내용	세부사항 (예시)
보 호	의식주	숙식, 의복 제공, 샤워, 이·마용, 휴식 등
	의료지원	건강검진(발달상태, 성병 등), 응급치료, 질병치료, 임신테스트 등
	법적지원	법적 옹호, 법률연계, 법률행정지원 등
	문화여가활동	다양한 문화체험, 취미생활지원, 봉사활동 캠프 등
	생활지도	초기적응 프로그램*, 자치회의, 일상생활 훈련, 갈등조정 등
	정서지원	개별상담, 집단상담 등
가정복귀 지원**	가족상담	가정방문, 부모교육 및 상담, 가족과의 전화연결 등
	가족지원	가족서비스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 등
	귀가지원	귀가계획세우기, 귀가준비상담, 가족생활적응 상담 등

출처 : 여성가족부,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(2권), 295p

- 본 개정안에 대해 평생교육국(청소년정책과)은 조례(「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) 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동의한다는 의견(원안 동의)을 제출하였음.

1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(이하 “청소년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쉼터: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2) 청소년쉼터의 종류는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쉼터(24시간~7일 이내 일시보호), 단기쉼터(3개월 이내 단기보호), 중장기쉼터(3년 이내 중장기보호)로 구분함.

- 가정 밖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(금융 피해, 아동학대, 취업사기, 폭력 및 성범죄 피해 등)의 위험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, 조례 개정 시 평생교육국은 본 조례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에 따라 매년 수립·시행하는 ‘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계획’ 등에 구체적인 법적 지원 및 행·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, 당면한 법적 난관 해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현재 시립청소년복지시설 중 일부(망우청소년단기쉼터, 신림청소년중장기 쉼터)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, 입법취지 상 요구되는 가정 밖 청소년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보이는데, 조례 개정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〈 시립청소년복지시설 중 법적 지원 프로그램 〉

연번	시설명	보호 정원	주요 사업	주요 프로그램	사업비 (천원)
10	망우 단기	20 (여)	【4개 사업】 교육문화, 목적사업 상담지도사업, 기타사업	【45개 프로그램】 (교육문화) 바리스타, 신체활동, 여행, 학업지원, 자립지원 등 (목적사업) 의식주지원,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, 법률지원 (상담지도) 상담, 사후관리, 통합예술치료, 성교육 등 (기타사업) 홍보 및 아웃리치	284,445
12	신림 중장기	10명 (남)	【4개 사업】 교육문화, 목적사업 상담지도사업, 기타사업	【24개 프로그램】 (교육문화사업) 여행 문화 요리 음악 스포츠 멘토링 경제인문교육 등 (목적사업) 숙식제공, 활동비지급, 의료지원, 법률지원 등 (상담지도) 일자리, 학업, 자격증취득, 퇴소준비 지원 등 (기타사업) 지역사회연계, 홍보 등	79,154

출처 : 市 청소년정책과(2025.1.9.), 2025년 청소년복지시설(쉼터, 자립지원관)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검토보고, 붙임4(‘25년 청소년복지시설 세부 사업계획(안))

전 문 위 원	정 찬 일	입 법 조 사 관	최 현 중
---------	-------	-----------	-------